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 년 8 월 21 일

CUOMO 주지사, 홍수 피해 카운티에 연방 공공 지원을 연장한다고 발표하다

FEMA, 9 월 10 일까지 재난 선포 카운티의 잠재적 지원요청자들을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뉴욕의 요청을 승인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FEMA 가 이번 여름 6 월 초/7 월 초까지 홍수 피해를 입은 카운티의 지속적인 공공지원 아웃리치를 연장해달라는 뉴욕의 요청을 승인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7 월 10 일 자서신에서 주지사는 홍수 피해를 입은 카운티에 연방 공공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FEMA 가 피해 예비 평가(PDAs) 결과를 수집하고 피해를 입은 카운티에서 주와 지방 비상관리 담당자들의 협조를 얻어 Cuomo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피해액이 3270 만 달러를 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는 뉴욕주의 1 인당 한도인 2670 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커뮤니티들이 아직도 최근에 발생한 홍수 피해를 복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FEMA 가 연방 지원 신청 마감시한을 몇 주 더 연장해달라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엄청난 인프라 피해를 복구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을 위한 피해 상황 평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홍수 피해 지역에 사는 뉴욕 주민들이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좋게 복구하려면 매우 절실한 자금입니다.”

FEMA 는 처음에는 7 월 12 일에 Allegany, Chenango, Cortland, Delaware, Franklin, Herkimer, Madison, Montgomery, Niagara, Oneida, Otsego, Warren 카운티에 대한 주지사의 공공지원 자격 요청을 승인하였고, 이후 Broome, Chautauqua, Clinton, Essex 카운티를 추가하여 이 목록을 수정하였습니다.

공공 지원은 재해로 손상된 시설의 비상 작업 및 수리나 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뉴욕주의 연장 요청을 허가하는 승인서에서 FEMA 연방조정관(Federal Coordinating Officer) 겸 재난복구관리자(Disaster Recovery Manager)인 Regis Phelan 은 이번 승인은 “뉴욕주가 잠재적인 신청자들에게 연락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폭풍 피해 복구 지원 신청을 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커뮤니티에게 중요한 서비스로 여겨지는 사항들을 제공하는 민간 비영리기관은 폭풍에 따른 긴급 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Korean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및 기타 치료시설
- 소방서, 경찰서 및 기타 긴급 서비스
- 전기, 수도, 하수 유틸리티
- 교육기관

중요한 정부형 서비스로 여겨지는 사항들을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비영리기관도 긴급 작업 자금을 위해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민간 비영리기관은 먼저 미국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RPA 는 SBA 에 신청하기 전에 또는 동시에 제출할 수 있음): <http://www.sba.gov/content/disaster-loan-program>.에서 융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융자가 거부될 경우 PNP 가 FEMA 에게 공공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요청이 뉴욕주에 접수되었을 경우).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관, 박물관, 동물원
- 커뮤니티 센터
- 장애인 자문 및 서비스 제공기관
- 노숙자 쉼터 및 재활시설
- 노인복지센터 및 탁아센터.

신청하려면 민간 비영리기관이 미 국세청이 보낸 결정서신이 있거나, 비영리기관이 주법에 따라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타 주정부 증거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RPA 양식은 <http://www.dhSES.ny.gov/oem/recovery/>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지방정부 및 기타 지자체 신청기관은 관련 카운티 긴급담당관(Emergency Manager)에게 연락하여 공공지원 요청서 제출에 대한 추가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요건 및 양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dhSES.ny.gov/oem/recovery 을 방문하십시오.

민간 비영리기관은 작성이 완료된 공공지원 요청서를 뉴욕주 DHSES(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에 이메일(John Grubsick at jgrubsick3@dhSES.ny.gov)로 보내거나 팩스 (518-322-4984)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